

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[특별감찰관]

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

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. 다만,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
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4호

“**사고**”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가. **전보, 퇴직,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**

나. 휴가,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

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
특별감찰관법 제9조

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.

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
● 특별감찰관실 활동 내역



이석수 전 특별감찰관



날짜	내용
4 ~ 5월	특감실, 미르·K재단에 출연금 증용한 안종범 수석 첩보 입수 후 내사
6월 21일경	특감실, 박근령 이사장 사기혐의로 내사
7월 18일	<조선일보>, 우병우 수석의 처가땅 벅슨 매입 보도
7월 21일	이석수 특감, 박근령 이사장 검찰 고발
7월 27일	<TV조선>, 미르재단 486억원 모금 보도
7월말	이석수 특감,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
8월 16일	<MBC>, 이석수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 대화내용 보도
8월 18일	이석수 특감, 우병우 수석 검찰 고발
8월 19일	청와대, 이석수 특감의 통화를 두고 '국기문란행위'로 규정
8월 29일	검찰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후 이 특감 청와대에 사표제출
9월 23일	청와대, 이석수 특감 사표수리
9월 27일	인사혁신처, 특별감찰관실 직원 전원 자동퇴직 통보
10월 22일	후임 특별감찰관 임명 마감일(특감 결원 시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)



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

국회의원(여수갑)



● 특별감찰관실 활동 내역

□ 특별감찰관법 제5조

(감찰대상자)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
2.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

※ 특별감찰관법 제6조 (감찰개시) 4항

☞ 특별감찰관은 감찰 개시 후 5일(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감찰대상자,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**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**한다.

※ 특별감찰관법 제7조 (감찰종료) 5항

☞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(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, 세부 감찰활동 내역,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**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**한다.